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

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상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근거 조항에 ‘유출 방지시설의 설치’뿐만 아니라 ‘폐기물의 수거’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, 폐기물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